

19.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2년 9월 19일), 유보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2년 10월 14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승대 혁신성장국장)

□ 제안이유

-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대구광역시 메디시티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용 조례명 변경사항 반영 (안 제16조)
- 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메디시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18조제4호)

- 대구광역시 메디시티 기금 삭제 (안 제23조부터 안 제27조까지)
- 대구광역시 메디시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제관)

□ 개정취지 및 적법성 여부

- 본 개정 조례안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대체 가능한 메디시티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검토사항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18조제4호에서는 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메디시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안 제23조부터 제27조에서는 메디시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메디시티 기금*은 2011년에 설치하여 당초 2030년까지 500억원을 조성한 후 지역 의료산업 육성과 침복단지 입주기관 지원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2022년까지 225억원만 조성되었고,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도 규모가(2건, 15.5억원 지출) 크지 않아 일반회계 사업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메디시티기금 조성내역 및 기금사업 현황 : 참고 1

-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금 폐지 후 메디시티 기금과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함을 규정함.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8기 획기적인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계획³⁴⁾」에 따라 기금과 일반(특별)회계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메디시티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기금 조성의 목적인 첨단의료 분야 우수 인력 유치 및 지역 보건의료 육성사업 등이 일반회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4) 민선8기 획기적인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예산담당관 - 7696(2022. 7. 13.))

- **추진목표** : 강력한 재정혁신을 통한 채무감축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 부담을 해소하고 줄어드는 이자 비용은 복지사업 및 대구 미래 준비에 재투자
- **4대 추진전략**
 - 일부 기금 및 특별회계 폐지
 - 유희·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 선심성·관행적 지출 및 집행 부진사업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23년 시행)

참 고 1

메디시티기금 조성내역 및 기금사업 현황

□ 개 요

- 설치근거 :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 설치목적 : 지역 의료산업 육성 및 침복단지 입주기관 지원 등
- 설치연도 : 2011년
- 재 원 :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 이자수입
- 조 성 액 : 22,583백만원('22. 9월말) ※ 조성액 목표 : 2030년까지 500억원
- 운용방안 : 기금 발생이자 수준의 지출사업비를 운용하되, 초기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금 사용
- 활용계획 : 첨단의료 분야 우수 인력유치 및 육성등 침복단지 입주기관 지원, 지역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대구시 일반회계 지원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지원

□ 기금사업 추진현황

- 한방고유처방 자금정 효능 과학화 및 연구사업 지원
 - 사업기간 / 사업비 : 2017. 3 ~ 12월 /1.5억원(기금 1, 현물 0.5)
 - 수행기관 : 한국한의학연구원
 - 사업내용 : 자금정의 향아토피 및 향중독 효능 평가 및 규격화
- 한국뇌연구원 우수 뇌과학자 유치 및 육성 지원
 - 사업기간 / 사업비(계획액) : 2020 ~ 2022년 / 59억(국 41.5, 기금 17.5)
 - 수행기관 : 한국뇌연구원
 - 지원내용 : 신규채용 뇌과학자 인건비(특별상여금), 전세보증금

□ 기금 조성내역 (2022. 9월)

구 분	수 입 액			지출액	조성액 ①-②
	계①	전입금	이자수입 등	사업비②	
계	24,133,190	21,000,000	3,133,190	1,550,000	22,583,190
2011년	3,007,989	3,000,000	7,989		3,007,989
2012년	3,070,317	3,000,000	70,317		3,070,317
2013년	3,196,483	3,000,000	196,483		3,196,483
2014년	3,204,349	3,000,000	204,349		3,204,349
2015년	3,273,607	3,000,000	273,607		3,273,607
2016년	3,273,363	3,000,000	273,363		3,273,363
2017년	1,467,085	1,000,000	467,085	100,000*	1,367,085
2018년	1,318,899	1,000,000	318,899		1,318,899
2019년	401,365	0	401,365		401,365
2020년	293,535	0	293,535	600,000*	-306,465
2021년	534,002	0	534,002	150,000*	384,002
2022년	1,092,195	1,000,000	92,195	700,000*	392,195

* 지출사업 : (2017년)자금정 효능 과학화 및 연구개발(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20~22년)우수 뇌과학자 유치 및 육성 지원(한국뇌연구원)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 요지	답변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사업 수혜자쪽에서는 별다른 동향은 없는지? ○ 지금까지 기금을 추진한 사업비가 15억 5천만원임. 이 사업비들의 회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별다른 이의제기나 동향은 없음. ○ 사업비중 소모성 사업비의 경우는 회수가 불가능함. 다만, 뇌 연구에 지출한 전세보증금의 경우 환수 받을 예정임. ○ 의료산업이 충분히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믿어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 해당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